

오산시 자치법규안 예고

「오산시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0년 4월 17일

오산시의회의장

오산시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한 조례안 (김영희 의원 발의)

1. 제안이유

- 「보건의료기본법」 제41조에 따라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가.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3조).
- 나.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하고,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추진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함(안 제4조 및 제5조).
- 다.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하여 만성질환 예방관리 지원사업과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함(안 제6조).
- 라. 각종 행사 및 교육 시 만성질환 예방을 위하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여 만성질환자 조기발견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(안 제7조).

마. 발견된 만성질환자를 보건소에 관리대상자로 등록하여 지속적인 건강 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(안 제8조).

바.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역사회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(안 제9조).

3. 조례안 : 붙임

4. 의견제출

- 제출기일 : 2020년 4월 24일까지
- 제출방법 : 서면, 우편, 오산시의회홈페이지 등
- 기재내용 : 주소, 성명, 연락처번호, 의견
- 제출기관 : 오산시의회(전문위원실)
 - 우편번호 : 447-701
 - 주 소 : 오산시 성호대로 141(오산동, 오산시의회)
 - 전 화 : 031)8036-8023, · 팩 스 : 031)375-2875
 - 전자메일 : pk1121@korea.kr

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

조례 명 : 오산시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한 조례안

의견제출자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조례안 내용	찬 성 여 부		의 견	비 고
	찬성	반대		

오산시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한 조례안

(김영희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제8-283호
----------	---------

발의년월일 : 2020년 4월 14일

발의의원 : 김영희 의원

찬성의원 : 장인수, 성길용, 이성혁 의원

□ 제안이유

- 「보건의료기본법」 제41조에 따라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.

□ 주요골자

- 가.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3조).
- 나.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하고,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추진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함(안 제4조 및 제5조).
- 다.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하여 만성질환 예방관리 지원사업과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함(안 제6조).
- 라. 각종 행사 및 교육 시 만성질환 예방을 위하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여 만성질환자 조기발견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(안 제7조).
- 마. 발견된 만성질환자를 보건소에 관리대상자로 등록하여 지속적인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(안 제8조).
- 바.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역사회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(안 제9조).

□ 참고사항

- 관계법령발췌서 : 「보건의료기본법」 제41조 등 - 별첨

오산시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보건의료기본법」 제41조에 따라 오산시민의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만성질환”이란 유병률 또는 사망률이 높고, 질병부담이 커서 관리가 필요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질환을 말한다.
 - 가. 심뇌혈관질환(심장질환, 뇌혈관질환, 고혈압, 당뇨병, 이상지질혈증, 비만 등)
 - 나. 알레르기질환(천식, 아토피성피부염, 알레르기비염)
 - 다. 그 밖에 주요 만성질환(골관절염, 만성간질환, 만성폐쇄성폐질환, 만성호흡기질환, 암)
2. “만성질환 예방관리 등”이란 만성질환에 대한 예방, 건강검진, 진료, 교육·홍보, 등록관리, 환경구축, 연구 등을 통하여 오산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가 만성질환을 예방 및 관리하여 오산시민(이하 “시민”이라 한다)의 건강을 유지·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.
3. “건강관리”란 질병예방, 조기발견·치료, 예방교육, 영양개선, 건강생활 실천, 건강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 등을 통하여 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.
4. “관련기관”이란 시 관할 구역에 소재한 보건·건강 관련기관 및 의료기관을 말한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오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시민의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과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하며,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추진계획의 수립) ① 시장은 시민의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한 추진계획(이하 “추진계획”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
2.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 분야별 시책사업에 관한 사항
3.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지원에 관한 사항
4. 만성질환자 조기 발견, 등록 및 관리, 합병증 관리에 관한 사항
5. 지역사회 관련기관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
6. 그 밖에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③ 시장은 제1항의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기관·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④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련 기관·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⑤ 시장은 제1항의 추진계획이 「지역보건법」 제7조에 따라 수립된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따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제5조(실태조사 등) ① 시장은 효율적인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추진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.

② 실태조사는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. 다만,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임의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.

제6조(지원 사업) ① 시장은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은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예방관리 지원 사업

- 가. 만성질환자 및 가족에 대한 예방 교육 및 상담
 - 나. 만성질환 예방 홍보 및 체험교실 운영
 - 다.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환경조성 지원
 - 라. 의료기관, 복지기관, 의사회, 약사회, 지역대학 등을 포함한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지역협력체계 구축
2. 건강관리 지원 사업
- 가. 금연, 절주, 운동 등 건강생활실천사업
 - 나. 만성질환자의 영양개선사업
 - 다. 암 등 만성질환의 조기검진사업
 - 라. 만성질환으로 인한 자살, 우울증 등 정신보건사업
 - 마. 만성질환자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물품 지원
 - 바. 의료기관 및 복지기관과의 보건의료 정보제공 및 공유 등

제7조(만성질환 조기발견사업) 시장은 각종 행사 및 교육 시 만성질환 예방을 위하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여 만성질환자 조기발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제8조(등록관리) 시장은 발견된 만성질환자에 대해서는 보건소에 관리대상자로 등록하여 지속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.

제9조(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) 시장은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역사회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

제10조(포상) 시장은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 증진에 기여한 기관이나 법인·단체, 개인 등에 대하여 「오산시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제11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첨]

관계법령 발취

「보건의료기본법」

제41조(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암·고혈압 등 주요 만성질환(慢性疾患)의 발생과 증가를 예방하고 말기질환자를 포함한 만성질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의 제공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「지역보건법」

제7조(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) 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 또는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(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, 이하 "시장·군수·구청장"이라 한다)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.

1. 보건의료 수요의 측정
2. 지역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장기·단기 공급대책
3. 인력·조직·재정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
4.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구성 방안
5.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

②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매년 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제11조(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) ① 보건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업무를 수행한다.

1.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
2.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, 조사·연구 및 평가
3. 보건의료인 및 「보건의료기본법」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·관리·육성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지도·관리
4. 보건의료 관련기관·단체, 학교, 직장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
5.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·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
 - 가. 국민건강증진·구강건강·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
 - 나.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

- 다.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·증진
- 라. 여성·노인·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·증진
- 마.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
- 바.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,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
- 사.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 사업

② 제1항에 따른 보건소 기능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【지방자치법】

제9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지방자치단체의 구역, 조직,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
가. ~ 카. (생략)
2.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
가. ~ 라. (생략)
마. 보건진료기관의 설치·운영
바.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
사. ~ 차. (생략)
3. 농림·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
가. ~ 하. (생략)
4.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·관리에 관한 사무
가. ~ 거. (생략)
5. 교육·체육·문화·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
가. ~ 마. (생략)
6.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
가. ~ 나. (생략)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